

순 천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269호 2019. 11. 28. (목)

고 시

순천시 고시 제2019-226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고시 2

회 람											
-----	--	--	--	--	--	--	--	--	--	--	--

발행 : 순천시

편집 : 홍보실 (749-5705, FAX : 749-4625)

고

시

순천시 고시 제2019-226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고시

순천시의회 의결을 얻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순 천 시 장

회 계 별 예 산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374,916,639	100.00%	1,340,411,416	100.00%	34,505,223	2.57%
일반회계	1,184,564,993	86.16%	1,150,588,542	85.84%	33,976,451	2.95%
특별회계	190,351,646	13.84%	189,822,874	14.16%	528,772	0.28%
공기업특별회계	167,672,985	12.20%	167,061,557	12.46%	611,428	0.3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665,370	2.67%	36,790,493	2.74%	△125,123	△0.3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135,843	4.66%	63,993,526	4.77%	142,317	0.2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6,871,772	4.86%	66,277,538	4.94%	594,234	0.90%
기타특별회계	22,678,661	1.65%	22,761,317	1.70%	△82,656	△0.3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01,428	0.02%	301,428	0.02%	0	0.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658,786	0.48%	7,383,193	0.55%	△724,407	△9.8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50,080	0.29%	3,865,013	0.29%	85,067	2.20%
수질개선특별회계	7,006,045	0.51%	7,077,708	0.53%	△71,663	△1.01%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222,679	0.31%	3,623,075	0.27%	599,604	16.5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39,643	0.04%	510,900	0.04%	28,743	5.63%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1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74,916,639	41,247,499
일반회계	1,184,564,993	35,536,950
특별회계	190,351,646	5,710,549
공기업특별회계	167,672,985	5,030,19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665,370	1,099,96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135,843	1,924,07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6,871,772	2,006,153
기타특별회계	22,678,661	680,3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01,428	9,04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658,786	199,76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50,080	118,502
수질개선특별회계	7,006,045	210,181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222,679	126,6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39,643	16,18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228,12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 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